제4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00. 4. 27 (목) 10:00

의 안

○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113

제출년월일 : 2000. 4.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보완하므로서 시행착오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및 부위원장(산업건설국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심의대상공사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들을 소집하여 개최하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라. 설계심의대상, 사전심의 및 심의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설계심의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규정함(안 제11조)

바. 설계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가.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건설관련 공무원 및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본청 설계심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설계심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심의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들을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기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
2.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7억원이상인 공사
3. 공사비가 7억원 미만 이더라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전에 위원들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설계서를 배부하되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원미만의 공사 : 5일이내
2.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3.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공사 : 10일이내

③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공사는 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하기전에 심의 한다.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설계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당해 공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공법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제안 및 자문
3. 기타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사항

제11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부수는 위원장이 정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 자료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 및 설계용역회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보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1안건당 : 30,000원이하

2. 일비 및 여비 :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주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및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설 계 심 의 요 청 서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용 역 착 수 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설계상특기사항 :

덧붙임 :

20 . . .

신청인 : (인)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안 건 :

2. 심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직 위	위원성명	서 명	비 고

5. 심의결과 :

6. 심의내용 :

【별지 제3호서식】

설 계 심 의 대 장

	담당자	담 당	과 장

의 안 명		심의일자	
공 사 명			
위 치			
공사개요		시 행 자	
사 업 비		설 계 자	
심의위원			

○ 의결내용

관 련 법 령(발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안전성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 11 〈생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 113 호
○ 의 안 명 :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2. 제정이유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보완함으로서 시행착오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 및 부위원장(산업건설국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심의대상공사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들을 소집하여 개최하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라. 설계심의대상, 사전심의 및 심의범위를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설계심의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규정함 (안 제11조)
바. 설계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 (안 제13조)
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4. 검토의견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ㅇ 안 제9조 제1항은 심의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어, 심의내용에 해당하는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안 제10조 심의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0. 4.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